

[정 정 대 비 표]

■ 정정 집합투자기구 및 정정 서류

편	드	명	BNK트론코리아증권투자신탁1호(주식)		
정	정	서	류	(간이)투자설명서	
정	정	사	유	-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-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문구 조정 -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- 증권대차거래 및 거래비용 등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- 일반사무관리회사 사명 및 사옥 변경 - 환매조건부매수 문구 추가	
효	력	발	생	일	2023년 10월 27일

■ 정정대비표

[간이투자설명서]

항목	정정사유	정정 전	정정 후
[요약정보]			
투자비용	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	-	- 최근 결산일 또는 2023.10.15 기준으로 업데이트
투자실적 추이(연평균수익률)	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	-	- 최근 결산일 또는 2023.10.15 기준으로 업데이트
운용전문인력	-	-	- 2023.10.15 기준으로 업데이트
주요투자위험	문구 조정	-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위험: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,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,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<u>1년</u> 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,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<u>1년</u> 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동의없이 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	-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위험: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,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,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<u>1년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 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)</u> 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,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<u>1년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 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)</u> 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동의없이 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
과세	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	- <u><문구 추가></u>	- <u>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: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</u>

		- <문구 추가>	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,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(연금수령시),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(연금외수령시)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, 관련 사항은 “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- 퇴직연금제도의 세제: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 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 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.
--	--	------------------------	--

[투자설명서]

항목	정정사유	정정 전	정정 후
[요약정보]			
투자비용	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	-	- 최근 결산일 또는 2023.10.15 기준으로 업데이트
투자실적 추이(연평균수익률)	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	-	- 최근 결산일 또는 2023.10.15 기준으로 업데이트
운용전문인력	-	-	- 2023.10.15 기준으로 업데이트
주요투자위험	문구 조정	-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위험: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,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,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,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동의없이 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	-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위험: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,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,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 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)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,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 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)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동의없이 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
과세	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	- <문구 추가>	-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: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

		- <문구 추가>	자산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,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(연금수령시),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(연금외수령시)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, 관련 사항은 “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- 퇴직연금제도의 세제: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 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 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.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-	-	- 2023.10.27: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,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문구 조정, 소득세법 개정 사항 반영, 증권대차거래 및 거래비용 등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, 일반사무관리회사 사명 및 사옥 변경, 환매조건부매수 문구 추가
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-	-	- 2023.10.15 기준으로 업데이트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	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, 환매조건부매수 문구 추가, 오기 정정	가. 투자 대상 ① ~ ⑧ (생략) ⑨ 증권의 대여 <주식 추가> ⑩ 투자증권의 차입 <주식 추가> ⑪ 단기대출, 금융기관에의 예치: 수	가. 투자 대상 ① ~ ⑧ (현행과 동일) ⑨ 증권의 대여 주2)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각 목과 같은 목적을 위해 증권 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1. 수익률 증진: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,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2. 기타 효율적, 안정적 운용 ⑩ 증권의 차입 주3) 효율적 운용,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, 환매 대응, 유동성 확대,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음 ⑪ 단기대출, 금융기관에의 예치: 수

		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. 1. ~ 2. (생략) 3. <신설> ⑫ (생략) 주1) 투자비율은 투자신탁재산 자산 총액에 대비하여 산출 1. ~ 2. (생략) 3.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(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) 4. ~ 5. (생략) 나. (생략)	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. 1. ~ 2. (현행과 동일) 3. <u>환매조건부매수(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. 이하 같다)</u> ⑫ (현행과 동일) 주1) 투자비율은 투자신탁재산 자산 총액에 대비하여 산출 1. ~ 2. (현행과 동일) 3.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(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) 4. ~ 5. (현행과 동일) 나. (현행과 동일)
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	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,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문구 조정,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	가. ~ 나. (생략) 다. 기타 투자위험 -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위험: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,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,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 미만인 경우,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동의없이 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 - <위험 추가>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	가. ~ 나. (현행과 동일) 다. 기타 투자위험 -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위험: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,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,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 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)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 미만인 경우,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 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)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및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동의없이 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 - 증권대차거래 위험: 증권대차거래가 일어나는 펀드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,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

		- 집합투자업자는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펀드의 경우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투자신탁 위험등급을 매우 높은 위험(1등급)에서 매우 낮은 위험(6등급)까지 6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.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(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)은 <u>20.9817%</u>이며, 6단계의 투자위험등급 중 2등급(높은 위험)으로 분류됩니다. (최근 결산일 : <u>2022.09.09</u>)	- 집합투자업자는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펀드의 경우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투자신탁 위험등급을 매우 높은 위험(1등급)에서 매우 낮은 위험(6등급)까지 6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.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(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)은 <u>16.6097%</u>이며, 6단계의 투자위험등급 중 2등급(높은 위험)으로 분류됩니다. (최근 결산일 : <u>2023.09.09</u>)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	1) ~ 2) (생략) 가. (생략)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-	1) ~ 2) (현행과 동일) 가. (현행과 동일)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- 최근 결산일 기준으로 업데이트
14.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	문구 조정,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	가. 이익배분 -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수익증권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. (이하 생략) 나. 과세 투자소득에 --- (생략) --- 나누어집니다. (1) ~ (4) (생략) (5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: Class C-P, C-Pe, S-P 및 J-Pe 가입자 [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] - 수령요건: 55세 이후 <u>10년간</u>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(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) - 세액공제: [납입금액] - 해당과세기간에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. ①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<u>400만원</u> 이내. 단, 2022년 12월 31일까지 「소득세법」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	가. 이익배분 -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 기준 가격으로 당해 <u>종류</u> 수익증권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. (이하 현행과 동일) 나. 과세 투자소득에 --- (생략) --- 나누어집니다. (1) ~ (4) (현행과 동일) (5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: Class C-P, C-Pe, S-P 및 J-Pe 가입자 [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] - 수령요건: 55세 이후 <삭제>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(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) - 세액공제: [납입금액] - 해당과세기간에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. ①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<u>600만원</u> 이내. <삭제>

		<u>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인 거주자는 납입액 600만원 이내</u> ② <u>상기①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만원 이내</u> ③ (생략) [세액공제] -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납입금액의 13.2%에 대해 세액공제.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<u>4천만원</u>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.5%에 대해 세액공제 -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: 천재지변 / 가입자의 사망, 해외이주,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/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(소득세법 제50조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함)의 질병·부상에 따른 3개월 이상 요양 / 금융기관의 영업정지, 영업 인·허가 취소,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/ <신설> (6)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: Class C-P2, C-P2e 및 J-P2e 가입자 - 세액공제: -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<u>400만원</u> 이내의 금액)과 연 <u>700만원</u> 중 적은 금액으로 하고, 2022년 12월 31일까지 「소득세법」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인 거주자는 해당	<삭제> ② (현행과 동일) [세액공제] -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납입금액의 13.2%에 대해 세액공제.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<u>4천 500만원</u>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.5%에 대해 세액공제 -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: 천재지변 / 가입자의 사망, 해외이주,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/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(소득세법 제50조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함)의 질병·부상에 따른 3개월 이상 요양 / 금융기관의 영업정지, 영업 인·허가 취소,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/ <u>연금계좌 가입자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6조제1항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</u> (6)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: Class C-P2, C-P2e 및 J-P2e 가입자 - 세액공제: -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<u>600만원</u> 이내의 금액)과 연 <u>900만원</u>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. <삭제>
--	--	--	---

		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)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되,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)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. -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.2%에 대해 세액공제. 단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<u>4천 500만원</u>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.5%에 대해 세액공제 ※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(원천징수세액의 10%)를 포함한 세율입니다.	-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.2%에 대해 세액공제. 단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<u>4천 500만원</u>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.5%에 대해 세액공제 ※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(원천징수세액의 10%)를 포함한 세율입니다.
--	--	---	---

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

-	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	-	- 최근 결산일 또는 2023.10.15 기준으로 업데이트
1. 재무정보	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	가. 요약재무정보 - <항목 추가>	가. 요약재무정보 - <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>, <주식의 매매회전율>

제4부.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
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-	-	- 2023.10.15 기준으로 업데이트
3.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(신탁업자)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가. (생략) 나. 주요업무 (1) (생략) (2)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[의무] ① ~ ② (생략)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▶ 투자설명서가 법령·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/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/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의 여부 /	가. (현행과 동일) 나. 주요업무 (1) (현행과 동일) (2)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[의무] ① ~ ② (현행과 동일)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▶ 투자설명서가 법령·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/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/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의 여부 /

		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/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/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등 (이하 생략)	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/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/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/ 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·관리 중인 투자신탁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등 (이하 현행과 동일)
4.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	일반사무관리회사 사명 및 사옥 변경	가. 회사의 개요 - 회사명: <u>신한아이타스 주식회사</u> - 주소 및 연락처: <u>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0 ☎ 02-2168-0400</u> - 회사연혁 등(홈페이지 참조): www.shinhanaitas.com 나. (생략)	가. 회사의 개요 - 회사명: <u>신한펀드파트너스 주식회사</u> - 주소 및 연락처: <u>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8 ☎ 02-2168-0400</u> - 회사연혁 등(홈페이지 참조): www.shinhanfundpartners.com 나. (현행과 동일)
제5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			
2.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문구 조정	[의무해지] 집합투자업자는 ---(<u>생략</u>)--- 합니다. ▶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/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해지결의 /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/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/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(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) [임의해지] 집합투자업자는 ---(<u>생략</u>)--- 합니다. ▶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/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/ 해당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<u>1년</u>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/ 해당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<u>1년</u>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	[의무해지] 집합투자업자는 ---(<u>생략</u>)--- 합니다. ▶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/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해지결의 /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/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/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(다만, <u>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</u>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<u>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</u> 정하는 경우는 제외) [임의해지] 집합투자업자는 ---(<u>생략</u>)--- 합니다. ▶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/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/ 해당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<u>1년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)</u>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/ 해당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<u>1년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)</u>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

		(이하 생략)	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(이하 현행과 동일)
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	문구 조정	가. (생략) 나. 수시공시 (1) (생략) (2)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--- (생략) --- 합니다. 1. ~ 7. (생략) 8.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(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) 9.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(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) 10. (생략) (3) (생략)	가. (현행과 동일) 나. 수시공시 (1) (현행과 동일) (2)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--- (생략) --- 합니다. 1. ~ 7. (현행과 동일) 8.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)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(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) 9.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(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한 후 2년)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(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) 10. (현행과 동일) (3) (현행과 동일)

<끝>.